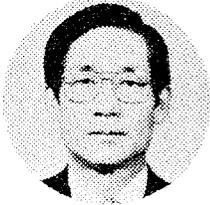


WIPO工業所有權會議를 마치고



李 殷 璋

〈特許廳 次長〉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工業所有과 著作權을 다루는 UN專門機構로서 그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位置하고 있다. 筆者는 WIPO가 主催하는 企業專擔部署設置에 관한 會議에 參席하기 위하여 지난 3月 20日 밤 9時 管理局 指導課의 金俊圭事務官을 帶同하고 스위스의 제네바를 向해 金浦空港을 떠났다.

1979年 3月 WIPO 第6次 工業所有權開發協力常設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開發途上國企業體의 工業所有權業務組織에 관한 指針書作成 作業團會議」가 開催된 것이다.

나는 機內에서 同 會議의 關聯事項을 檢討하면서 이번 會議에서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制度 및 特許行政體制의 發展을 위해 最大의 成果를 거둘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進行될 會議節次 및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構想해 보았다. 工業立國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를 뒷받침할만한 工業所有權制度의 完備가 얼마나 重要한가를 생각할 때 莫重한 責任을 느꼈다.

3月 21日 우리는 프랑스 파리의 오를리空港에 寄着하여 스위스行 飛行機를 갈아타고 22日 16時 30분에 筆者가 1968년부터 5年間 제네바韓國代表部에서 勤務한 적이 있는 제네바에 到着했다.

다음날 現地에서 金時銜 제네바駐在商務官과 合流하여 會議場所인 WIPO 國際會議室로 向했다.

WIPO本부는 옛날 國際聯盟本部이며, GATT와 UNCTAD, 其他 各種 國際會議가 每年 開催되는 Palais de Nation 建物 맞은 편에 優雅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會議에는 韓國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베네수엘라, 자이레 등 9個 開發途上國과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蘇聯, 네덜란드 등 6個先進國, 美州間工業所有權協會(ASFPI), 國際辨理士聯盟(FICPI), LES,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 등 4個 非政府間國際機構의 代表團과 읍저버들이 各各 參席하였다.

同 會議는 3月 23일부터 27日까지 5日間 續開되었다. 첫날 K. 파너 WIPO 事務次長이 WIPO 事務總長을 代理하여 開會를 宣言하고 參加國 代表들에게 歡迎人事를 하였다. 이어서 議長團 選出에 들어갔는데 WIPO 國際事務局의 要請에 따라 韓國代表의 提案으로 議長에 A.A.Omar 이집트 特許廳長을, 副議長에 Messrs. T.T. Lobo 브라질國立工業研究所顧問, A.H. Loird 英國王立化學研究所 法律顧問을 各各 萬場一致로 選出했다.

會議에서는 指針書作成과 關聯하여 眞摯한 討議가 있었는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開發途上國의 企業發展을 위하여 工業所有權의 經濟的 利益에 관한 分析을 指針書에 包含시키기로 함

2) 특히 開發途上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해 노우하우 및 工權所有權의 라이선싱에 관한 開發途上國의 企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先進國의 關係機構를 活用하는 問題 및 國際 Licensing Executive Society(LES)를 活用하는 問題 등에 대한 檢討

4) 特許出願 및 技術研究開發에 最少限의 特許文獻說明, 特許文獻 등을 指針書에 包含시키는 問題

5) 特許侵害分野에서는 特許侵害調査를 위한 各種 代案과 損害賠償問題에 관한 具體的인 內容이 追加되었으며 特許實施 및 實施契約에 관한 項目의 反映

6) Patent Mapping Service, 生産戰略, 技術豫測 등에 관한 討議와 더불어 國家經濟 및 開發計劃의 必要性이 主要素로 考慮되었으며

7) 商標使用에 있어서 工業所有權部署와 事業部署間의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強調하였으며 類似商標의 使用問題에 관해서도 檢討됨

8) 企業內의 工業所有權部署와 外部工業所有權業務部署와의 關係 및 相互作用의 重要性이 보다 具體化되었으며 企業內의 他部署 즉 研究部署, 製造生産部署, 一般法律部署와의 關係가 具體的인 實例에 따라 檢討되었음

9) 特許서치(Search)에 관한 項目이 開途國企業의 必要성과 非政府間國際機構의 提議를 考慮하여 修正되었음

10) 職務發明者들의 Team-work에 의해 企業內 職務發明을 助長하도록 職務發明에 관한 項目을 具體化하였으며 實際上的 指針書作成節次는 實務作業團會議에서 論議되고 提案된 위와 같은 內容을 土臺로 WIPO 國際事務局은 가이드案의 修正作業을 한 후 工業所有權에 관한 開發協力常設委員會의 議決를 거쳐 同가이드案을 國際事務局이 追後 發刊하게 될 것이다.

또한 後續事業으로서 指針書의 主要內容이 開途國에 實用化되도록 하기위해 評價計劃을 樹立할 것이며 특히 指針書의 廣範한 配布와 開途國 企業內의 工業所有權部署를 위한 訓練計劃을 樹立할 豫定이다. UNDP의 資金支援下에 實施될 主要 訓練計劃은 다음과 같다.

1) 企業內 工業所有權業務組織의 設置에 따른 有益한 점과 設置에 必要한 條件 등을 開途國에 認識시키기 위하여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專門家 協力を 위한 一般 Seminar 開催

2) 開途國 企業內의 工業所有權部署의 設置運營에 관한 Seminar 開催

3) 先進國 企業의 協調를 얻어 특히 Fellowships를 통해 開途國企業內의 工業所有權部署에 勤務하거나 從事하고 싶어하는 要員을 위한 訓練計劃을 組織化할 것

韓國代表團은 이번 會議에서 가이드案에 대한

우리側의 基本立場을 說明하고 案內冊子를 配하하여 韓國特許廳現況을 說明하는 등 弘報活動도 續다.

特記할 만한 것은 會議 이틀째인 3月 24日 午前에는 同會議를 위해 準備해 가지고 간 株式會社 金星社의 特許管理事例슬라이드를 上映하여 韓國의 企業特許管理를 紹介하였는데 發表가 끝난후 各國代表들로부터 많은 質問洗禮와 함께 韓國企業의 特許管理에 대한 깊은 關心과 아낌 없는 讚辭를 받았다. 특히 WIPO 事務局은 韓國이 이 作業團會議에 寄與하기 위해 훌륭한 슬라이드를 準備한데 대하여 깊은 感謝를 表함과 同時에 이 事例를 餘他 開途國에 model로서 活用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代表團은 슬라이드를 開途國에 널리 活用토록 하기 위해 WIPO 事務局의 要請에 따라 이를 寄贈하고 돌아왔다.

이 슬라이드內容中 特許圖情報制度(Ppatent Mapping Service System)는 대단히 훌륭한 制度라고 높이 評價를 받고 가이드案에 反映케 되었다.

3月 25日에는 WIPO 事務總長 A.Bogsch 博士를 禮訪, 韓國特許廳現代化計劃推進에 協調하여 준데 대해 謝意를 表明하였으며, 이에 대해 同事務總長은 韓國이 開途國中에서 工業所有權制度가 가장 發展된 나라라고 稱讚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어 WIPO 事務次長 파너博士를 禮訪하고 Aly-Bey Kecherid 工業所有權開發協力擔當官이 同席한 가운데 韓國特許行政現代化計劃을 비롯하여 PCT 加入, 專門要員의 海外訓練, 各種세미나參加, 國際間審査協力的 多邊化, 各種關聯法改正에 따른 WIPO의 協力問題를 놓고 熱議하였다. 專門家の 海外訓練에 대해서는 具體的 이야기와 오고갔는데 PCT 訓練을 위해 特許廳職員 2名을 WIPO 本부와 EPO 등에 2個月間 派遣教育 시키는 問題, 商標登錄條約, 마드리드協定, 國際特許分類, 부다페스트條約 등의 加入에 따른 韓國特許廳의 海外訓練 및 이에 따른 資金을 UNDP나 外部로부터 確保하는 問題 등에 最大한 協力할 것을 다짐받았다.

27日에 모든 會議日程을 마치고 週末을 제네바에서 보낸 다음 3月 30日 네덜란드에 到着하여 우리나라 大使館을 訪問하고 네덜란드特許廳長 J. Dekker씨와 次長 Eno Van Weel씨를 禮訪,

電算시스템과 資料室도 돌아보았으며 우리나라 特許行政現代化計劃을 說明하고 海外訓練 및 各種資料交換 問題등을 協議하였다.

4月 1日 헤이그에 있는 유럽特許廳(EPO)을 訪問, 海外研修 및 調查業務에 關해 協議를 갖고 컴퓨터 센터와 調查部署를 찾아 그 조직과 業務에 關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온라인 서치시스템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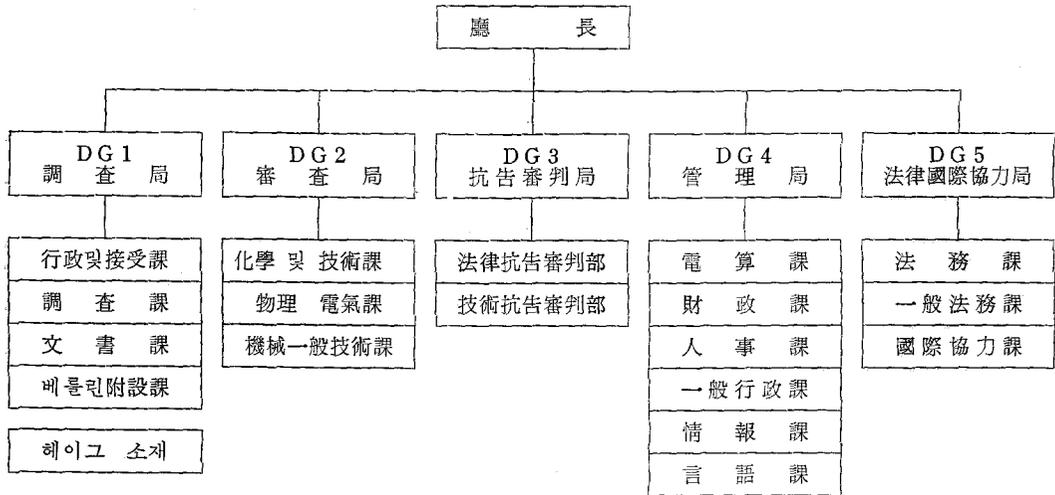
유럽 特許廳(EPO)은 約 20餘個 유럽 國家들의 積極인 協力下에 1977年 創設, 그 本部는

에 依해 直接 利用되고 있다.

또한 EPO의 開發協力事項으로는 開發途上國의 訓練生을 받아 特許文獻의 利用, 分析, 調查節次등에 關한 研修를 實施하고 있고 Seminar도 實施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國內出願은 勿論이고 外國出願으로 눈을 돌려야 할때가 왔으며 우리의 經濟進出을 위해서는 歐洲經濟諸國의 出願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EPO의 出願節次를 要略하면 出願과 더불어 方式審査가 着手되고 1個月 以內에 補正通知가

EPO機構表



西獨 문헌에 位置하고 헤이그에 그 支部를 두고 있다.

現在 EPO의 會員國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英國등이며 1978년부터는 EPO에 단한번 出願을 하면 全會員國에 出願하는 效果를 갖는다.

EPO의 主要機能은 別表 에서와 같이 廳長 밑에 5個局이 있으며 其中 第1局은 調查局(서치담당)으로서 헤이그에 位置하고 있다.

EPO에는 現在 500名以上의 有能한 技術職要員이 審査와 서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全技術分野에 專門知識을 갖고 있다.

EPO의 特記事項은 廣範한 特許文獻保有量이며 約 60,000餘種이 既特許된 發明이 國際分類로 細分類되어 있고 約 3千萬件 以上의 科學技術文獻과 1千 2百萬件 以上의 技術文獻이 Computer

나간다. 出願의 早期公開制를 採擇, 出願日이나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8個月後에 公開되며 出願人이나 早期公開後의 第3者에 의한 調查請求는 7年以內에 可能할뿐 아니라 追加調查請求도 認定된다. 公開後 4個月의 異議申請이나 提訴期間을 거치게되며 異議申請이나 提訴가 없는 때는 自動적으로 特許權이 許與되며 所定의 手数料支拂과 同時에 該 權利는 出願日로부터 20年間存續하게 된다.

이번 會議의 成果에 따라 將來 韓國의 企業體들이 갖추어야할 理想인 工業所有權體制가 무엇인가를 머리속에 그리면서 4月 1日 암스테르담을 떠나 北極航路를 따라 앵커리지, 東京을 거쳐 4月 3日 서울로 돌아왔다. 紀行文과 報告文의 折衷文形式이 된 이 글의 執筆이 좀 늦은 感이 있으나 工業所有權界의 여러분에게 多小나마 參考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